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집회·시위 참가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

■ 모경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6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모경중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3. 5.
3. 회 부 일 :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2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제5조의2(집회 및 시위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 누구든지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22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2항, 제5조의2 또는----- -----. ④ (현행과 같음)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구현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품·향응 등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있음.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로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있음.¹⁾ 동 규정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선거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결집하여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서 선거 결과는 향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반면, 집회·시위는 정치 과정에 있어서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집회·시위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숙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와 집회·시위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답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답·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 7. (생략)

② ~ ⑧ (생략)

또한, 개정안에서는 금품·향응 등의 제공 금지 의무를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 등 행사 필수인원 또는 일반 참가자들에게 사회통념상 필요 최소한의 음식물 또는 행사 소요물품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집회·시위를 통한 국민의 의사 형성이 금전·향응 등으로 인해 왜곡·오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 등 필수인원 또는 참가자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소정의 음식물 또는 행사용품 등의 제공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과태료 처분²⁾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2) 유사 입법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는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제22조)와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제23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